

消防檢査規則運用指針

내 무 부

1. 目 的

1979. 4. 16자로 公布한 消防檢査規則의 運用에 適正을 期함.

2. 根 拠

消防檢査規則 第9条 但書

3. 施行 日

本 指針은 1979. 8. 14. 부터 施行한다.

4. 運用指針

다음 各項의 定하는 바에 依한 境遇에는 同檢査 規則 別表 第1号 乃至 第28号에서 定한 關聯項目의 基準의 檢査를 省略할 수 있다.

- (1) 옥내소화전의 설치는 특별피난계단 전실내부 또는 피난계단실(계단식 아파트의 계단제외) 내부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부터 5미터의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호스 접결구로부터 건물의 모든 부분이 수평거리 25미터 이내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수 있다.

소방검사규칙관련항목 1-2-(가)-(2)-(외관)
(이하 같다)

- (2) 옥내소화전 설비에 있어 호스 접결구는 사람이 직립한 자세에서 용이하게 밸브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바닥으로부터 150센티미터의 높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1-3-1 (가)-(6) (외관)

- (3) 옥내소화전 설비에 있어 앵글밸브의 토출압이 매평방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앵글밸브의 인입측에 적정한 감압장치를 설치하였을 경우 하나의 가압송수장치가 담당하는 입상관의 높이는 80미터를 초과할 수 있으나 1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3-1-(가)(1) (외관)

- (4) 모든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또는 장치가 국가 형식검정의 대상품인 경우에 있어서 국가 형식 검정합격품을 당해 설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본 검사규칙중 동 품목의 기능및 구조와 관계되는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옥내 소화 전설비 1-3-1 (가)(4)(7) (외관)

1-3-2 (가)(1)(2) (외관)

1-3-2 (가)(나) (기능)

옥외 소화 전설비 1-2-1 (가)(2) (외관)

1-2-1 (나) (기능)

1-2-2 (나) (기능)

1-2-3 (가)(2) (외관)

1-2-3 (가) (기능)

스프링크라 설비 5-4-1 (가)(7) (외관)

포말소화설비 8-12 (다) (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 1-3 (가)(3)(4)(5) (외관)

1-4 (가) (외관)

1-7-1 (사)(아)차 (기능)

1-7-2 (가)(다)(마) (기능)

1-8 (가)(나)(다) (기능)

2-3 (가)(3) (외관)

2-4 (가) (기능)

2-5 (가) (외관)

2-5 (가) (기능)

3-4 (가)(16) (외관)

3-5-1 (가)(5) (외관)

5-2-1-1 (가) (오동작판별및회로 이상경보장치사항) (외관)

5-2-1-2 (가) (오동작판별및회로 이상경보장치사항) (외관)

5-2-1-5 (가) (오동작판별및회로 이상경보장치사항) (외관)

5-2-16 (가) (오동작판별및회로 이상경보장치회로) (외관)

5-2-19 (가) (오동작판별및회로 이상경보장치사항) (외관)

화재속보설비 1-2 (가)(나)(다) (기능)

2-2 (가)(1) (외관)

유도등및유도표지 1-2 (나) (외관)
 2-1 (가) (6) (외관)
 2-2 (가) (기능)
 2-3 (가) (기능)
 2-4 (가) (나) (다) (1) (2) (라)
 (기능)
 연결살수설비 1-3 (가) (외관)
 (5)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물
 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
 설비에 있어서 내압이 사용압의 1.5배 이상이고 최소
 한 매평방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이상인 되는 강관(한
 국공업표준규격품) 및 그 부속 또는 동관 그 부속을 사
 용하여 지상 또는 지하매설배관을 할 수 있으며 관부속
 도 관과 동일재질이 아니더라도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배관의 접속은 용접이음도 허용된다.
 옥내소화전설비 2-1-1 (가) (외관)
 2-1-2 (가) (외관)
 2-2-1 (가) (외관)
 2-2-2 (가) (외관)
 2-2-3 (가) (나) (외관)
 4-4 (가) (8) (외관)
 옥외소화전설비 2-1-1 (가) (외관)
 2-1-2 (가) (외관)
 5-4-4 (가) (3)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2-4-4 (가) (3) (외관)
 3-1-1 (가) (외관)
 3-1-2 (가) (외관)
 3-2-1 (가) (1) (2) (3) (4)
 (6) (외관)
 3-2-2 (가) (외관)
 3-2-3 (가) (외관)
 10-2 (가) (11) (15)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2-4-4 (가) (3) (외관)
 3-1-1 (가) (외관)
 3-1-2 (가) (외관)
 3-2-1 (가) (1) (2) (3) (4)
 (6) (외관)
 3-2-2 (가)
 3-2-3 (가)
 2-7-2-2 (가) (11) (15) (외관)
 포말소화설비 2-4-4 (가) (3) (외관)
 3-1-1 (가) (외관)
 3-1-1 (가) (외관)
 3-2-1 (가) (1) (2) (3) (4)
 (5) (외관)
 3-2-2 (가) (외관)
 3-2-3 (가) (외관)
 9-2-1-3 (가) (6) (외관)

연결살수설비 3-1 (가) (외관)
 3-2 (가) (외관)
 3-5 (가) (3) (외관)
 (6)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
 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
 수설비의 배관(벨브류 포함)의 시험은 수압식 방법에
 의한 누수시험으로 2시간 시행하되, 배관내의 최대압
 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0.5킬로그램 이하일 경우는 매평
 방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의 압력으로, 동 최대 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0.5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동압력
 에 매평방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을 가산한 압력에서
 누수량을 검사하며, 누수량검사는 수량(水量)의 감소
 량을 계측(計測)할 수 있는 6리터이상 용량의 용기를
 이용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압 시험을
 하는 배관의 접속부분 100개소당 누수량이 2리터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건물의 2개층
 이상에 걸쳐 설치된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의 경우에는 고층부에서 저층부의 순으로
 수압시험을 시행한다.)
 옥내소화전설비 2-1-1 (가) (기능)
 2-1-2 (가) (기능)
 2-1-3 (가) (기능)
 2-1-6 (나) (기능)
 2-2-1 (가) (기능)
 2-2-2 (가) (기능)
 2-2-3 (가) (기능)
 2-2-7 (다) (기능)
 옥외소화전설비 2-1-1 (가) (기능)
 2-1-2 (가) (기능)
 2-1-3 (가) (기능)
 2-1-4 (나) (기능)
 스프링크라설비 3-1-1 (가) (기능)
 3-1-2 (가) (기능)
 3-1-3 (가) (기능)
 3-1-4 (나) (기능)
 3-2-2 (가) (기능)
 3-2-3 (가) (기능)
 3-2-5 (다) (기능)
 물분무소화설비 3-1-1 (가) (기능)
 3-1-2 (가) (기능)
 3-1-3 (가) (기능)
 3-1-4 (나) (기능)
 3-2-2 (가) (기능)
 3-2-3 (가) (기능)
 3-2-5 (다) (기능)
 포말소화설비 3-1-1 (가) (기능)
 3-1-2 (가) (기능)

3-1-3 (가) (기능)
 3-1-4 (나) (기능)
 3-2-1 (가) (기능)
 3-2-2 (가) (기능)
 연결살수설비 3-3 (나) (기능)

(7)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에 있어서 주철관을 사용한 지하매설 배관의 접속은 매카닉방법, 허브방법 외에도 유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적절한 접속재료로서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2-1-3 (가) (1)-(6) (외관)
 옥내소화전설비 2-1-3 (가) (1)-(6)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3-1-3 (가) (1)-(6)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3-1-3 (가) (1)-(6) (외관)
 포말소화설비 3-1-3 (가) (1)-(6) (외관)

(8) 옥내소화전설비의 지하배관에 있어서 급수주관의 강관을 사용하고 루프배관이 아닌 경우의 배관의 관경은 지상배관의 입상관 구경에 대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배관의 길이가 길어서 배관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로 인하여 호스 노즐에서의 방수압이 법정압력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리역학적 계산에 따라 배관의 구경을 증가시켜야 한다.

2-1-4 (가) (1)-(3) (외관)

(9)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에서 사용되는 개폐 표시형 밸브는 개폐가 수동방식의 것으로서 직접 조작해 보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것, 밸브를 개방하거나 닫을때마다 개폐상태가 육안으로 유효하게 확인될 수 있는 부대장치를 한 구조의 것, 개폐상태를 설비의 당해 제어반(또는 종합 수신반)에서 자동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것 중 어느 하나의 구조이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2-1-6 (가) (5) (외관)
 4-4 (가) (4) (0) (외관)
 4-4 (가) (5) (H) (외관)
 4-6-1 (가) (2) (A) (외관)

옥외소화전설비 1-1-1 (가) (5) (외관)
 2-1-4 (가) (4) (외관)
 5-6-1 (가) (2) (A) (외관)
 5-4-2 (가) (8)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2-4-2 (가) (8) (외관)
 2-4-3 (가) (6) (외관)
 2-6-2 (가) (2) (A) (외관)
 3-1-4 (가) (5) (외관)
 3-2-5 (가) (8) (외관)
 3-2-12 (가) (3) (외관)

3-2-14 (가) (5) (외관)
 5-4-1 (가) (1) (외관)
 5-5-1 (가) (1) (외관)
 7-2 (가) (2) (3) (외관)
 6-2-1 (가) (3) (개폐표시사항) (외관)

6-3-1 (가) (2) (외관)
 8-1-4 (가) (2) (외관)
 12-1-2 (가) (10) (외관)
 12-1-3 (가) (2) (외관)
 12-1-4 (가) (2) (외관)
 12-1-6 (가) (4) (외관)
 12-1-7 (가) (4) (외관)
 12-1-8 (가) (4)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2-4-2 (가) (8) (외관)
 2-4-3 (가) (6) (외관)
 2-6-2 (가) (2) (A) (외관)
 2-7-2-2 (가) (5) (14) (외관)

3-1-4 (가) (5) (외관)
 3-2-5 (가) (7) (외관)
 3-2-12 (가) (외관)
 8-1-1 (가) (2) (외관)
 8-2-2 (가) (10) (외관)
 8-1-3 (가) (4) (외관)

포말소화설비

8-1-4 (가) (4) (외관)
 2-4-2 (가) (8) (외관)
 2-4-3 (가) (6) (외관)
 2-6-2 (가) (2) (A) (외관)
 3-1-4 (가) (5) (외관)
 3-2-5 (가) (6) (외관)

9-2-2-2 (가) (2) (3) (외관)
 9-3-1-2 (가) (3) (외관)
 9-3-2-2 (가) (3) (외관)
 12-1-12 (가) (10) (외관)
 12-1-3 (가) (2) (외관)
 12-1-4 (가) (2) (외관)
 12-1-5 (가) (4) (외관)
 12-1-6 (가) (4) (외관)

(10)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은 다음 방법에 의한 배관의 물소재가 가능한 구조의 경우 수평 상태로 90도 각도로 꺾이는 부분에 티와 후렌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티와 후렌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는 지상에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이 갖추어진 구조물도 생략할 수 있다.

① 아래표에 정한 수량을 통수량으로 한 통수 배관소제를 계속하여 관내로부터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물 색깔이 정상적일때까지 실시하는 소제방법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소제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 소제(소제검사는 육안검사)를 한다.

② 배관소제 통수량

옥내소화전설비	2-1-7	(가)	(1)	(2)	(외관)
옥외소화전설비	2-1-6	(가)	(1)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2-4-4	(가)	(1)	(4)	(외관)
	3-1-6	(가)	(1)	(2)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3-1-6	(가)	(1)	(2)	(외관)
포말소화 설비	3-1-6	(가)	(1)	(2)	(외관)

② 배관소제 통수량

관의공칭구경 (밀리미터)		흡 수 량 (매 분 당 리 터)	
지 하 매 설 배 관	65	—	340(강관의 경우)
	80	—	490(")
	100	1,500(주철관의 경우)	900(")
	125	2,500(")	1,300(")
	150	3,500(")	1,800(")
	200	5,000(")	3,500(")
	250	7,000(")	5,000(")

(11)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의 지하배관매설공사 완료시 전배관내부가 제10항 ①: ② 방법에 의하여 소제 및 점검을 확행하여야 하며, 동 설비의 준공후라도 준공 1년후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매 6개월마다 배관소제 및 점검을 함으로써 시설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배관의 기능상장애(누수등)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옥내 소화전 설비	2-1-8	(가)	(1)	(2)	(외관)	
옥외 소화전 설비	2-1-7	(가)	(1)	(2)	(외관)	
스프링크라 설비	3-1-7	(가)	(1)	(2)	(3)	(외관)
물분무 소화설비	3-1-7	(가)	(1)	(3)	(외관)	
포말 소화 설비	3-1-7	(가)	(1)	(3)	(외관)	

(12)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의 지하매설배관은 각지방의 동결심도에 따라 적정한 깊이 에 매설될 수도 있으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매설될 경우 차량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적정한 보호조치가 되어야 하며 물탱크 및 압력탱크와 모든 배관의 대기에 노출되는 부분 또는 지하매설이 불가능한 곳의 배관이 동결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을 경우 적정한 보온재를 사용하거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유효한 방동조치를 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2-1-9	(가)	(1)	(2)	(외관)	
	2-2-4	(가)	(1)	(2)	(3)	(외관)
	3-4	(가)	(13)	(외관)		
	4-6-1	(가)	(10)	(외관)		
	4-4	(가)	(7)	(외관)		
옥외소화전 설비	2-1-5	(가)	(외관)			
	3-4	(가)	(11)	(외관)		
	4-	(가)	(1)	(2)	(외관)	
	5-4-4	(가)	(2)	(외관)		
스프링크라 설비	1-5	(가)	(1)	(2)	(외관)	
	1-5	(가)	(기능)			
	2-4-4	(가)	(2)	(기능)		
	3-1-5	(가)	(1)	(2)	(3)	(외관)
	3-2-15	(가)	(2)	(5)	(외관)	
	2-6-2	(가)	(7)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1-5	(가)	(1)	(2)	(외관)	
	1-5	(가)	(기능)			
	2-4-4	(가)	(2)	(외관)		
	2-6-2	(가)	(7)	(외관)		
	3-1-5	(가)	(1)	(3)	(외관)	
	3-2-11	(가)	(외관)			
포말소화설비	1-5	(가)	(1)	(2)	(4)	(외관)
	2-4-4	(가)	(2)	(외관)		
	3-1-5	(가)	(1)	(2)	(외관)	
	3-2-10	(가)	(외관)	(가열설비사 항제외)		

(13) 옥내소화전 설비에 있어 지상배관의 주입상관의 공칭 구경은 당해층의 소화전의 개수가 3개이하일 경우 펌프 토출구로부터 입상관의 높이가 15미터 이하에서는 공칭구경 50밀리미터이상 15미터를 초과하면 65밀리미터이상이고, 4개 내지 5개일 경우 입상관의 높이가 30미터이하에서는 공칭구경 65밀리미터이상, 20미터를 초과하면 80밀리미터이상이며, 5개를 초과할 경우 입상관의 높이가 30미터이하에서는 80밀리미터이상, 30미터를 초과하면 100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2-2-5	(가)	(외관)
	2-2-5	(가)	(기능)

(14)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불연성가스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소화설비에 있어서 지상배관의 지지는 공인된 규격의 지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공인 규격품 이외의 지지물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수량의 지지물을 사용하여 배관하중(상시물이 차있는 배관은 만수된 물의 하중포함)에 견딜수 있고 배관을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존속시킬 수 있으며 시설의 가동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2-2-8	(가) (2)-(9)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3-2-4	(가) (2)-(10) (외관)
	3-2-4	(가) (기능)
	10-2	(가) (16)
물분무소화설비	3-2-4	(가) (2)-(10) (외관)
	3-2-4	(가) (기능)
	2-7-2-2	(가) (16) (외관)
포말소화설비	3-2-4	(가) (2)-(10) (외관)
	3-2-4	(가) (기능)

(15)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 설비에 있어서 화재시의 소화용수(또는 포용액)가 토출구(분사 헤드, 노즐, 방수구 등)로 직접 향하는 관로상에 설치되는 개폐밸브에 한하여 개폐표시형이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2-2-9	(가) (4)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3-2-5	(가) (5)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3-2-5	(가) (4) (외관)
포말소화설비	3-2-5	(가) (3)

(16)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포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에 설치되는 공칭구경 40미리미터이상의 배관상에 설치하는 체크밸브는 웨퍼체크 밸브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스윙 체크밸브중 적합한 것을 설치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2-2-9	(가) (5)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3-2-5	(가) (6) (외관)
	10-2	(가) (14)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3-2-5	(가) (2) (체크밸브 4항)
		(5) (외관)
	2-7-2-2	(가) (14) (외관)

(17)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등에 사용되는 모든 밸브의 접결은 밸브의 접결부분의 특성(나사형 또는 후렌치형 등)에 적절하게 접결 마감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2-2-9	(가) (6) (외관)
	2-1-6	(가) (4) (외관)
옥외소화전설비	2-1-4	(가) (3)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3-2-17	(가) (1) (2) (외관)
	3-2-5	(가) (7) (외관)
	3-1-4	(가) (3)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3-1-4	(가) (3) (외관)
	3-2-5	(가) (6) (외관)
포말소화설비	3-2-5	(가) (5) (외관)

(18)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의 지하집수탱크 또는 고가탱크에 집수되는 물이 지하수 또는 시수의 경우로서 동 탱크의 상부가 대기에 노출된 상태(뚜껑 등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탱크에

정수장치의 설치 또는 채수구조를 3단계의 바닥으로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3-3	(가) (2) (4) (외관)
	3-4	(가) (4) (외관)
옥외소화전설비	3-3	(가) (2) (4)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1-3	(가) (2) (4) (외관)
	5-3	(가) (3) (정수시설사항) (외관)

(19)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에 있어 고가탱크에 설치된 저수위 경보장치가 소방시설의 전용수신기(또는 충수펌프기동반)에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저수위 표시가 되고 동시에 물탱크의 충수펌프를 자동으로 동작시키며 탱크의 적정 만수시에 자동으로 동 펌프의 동작을 중단시키는 구조의 것일 경우 탱크의 수량제, 별도의 자동급수조절장치 및 급수구, 채수구에 펌프모터를 자동으로 조작하는 전기설비의 설치는 생략될 수 있으며, 탱크의 전기설비의 설치는 생략될 수 있으며, 탱크의 급수구 관경은 공칭구경은 50미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3-4	(가) (5) (11) (12) (15) (외관)
옥외소화전설비	3-4	(가) (4) (12) (13) (14)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1-4	(가) (5) (6) (15) (16)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1-4	(가) (5) (6) (14) (15) (외관)
포말소화설비	1-4	(가) (4) (14) (15) (외관)

(20)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에 있어 고가탱크는 탱크의 유효수량이 법정수량이상일 경우에는 섬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3-4	(가) (7) (8) (9) (외관)
옥외소화전설비	3-4	(가) (6) (7) (9)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1-4	(가) (8) (9) (11)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1-4	(가) (8) (9) (11) (외관)
포말소화설비	1-4	(가) (7) (8) (10) (외관)

(2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에 있어 고가탱크 및 압력탱크의 물이 해수 등 농도가 짙은 전해질 용액이 아닌 경우에는 탱크의 내부에 아노드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3-4	(가) (14) (외관)
	4-6-1	(가) (9) (외관)
옥외소화전설비	5-6-2	(가) (9)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1-4	(가) (4) (외관)
	2-6-2	(가) (9)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1-4	(가) (4) (외관)
	2-6-2	(가) (9) (외관)
포말소화설비	1-4	(가) (3) (외관)
	2-6-2	(가) (8) (외관)

(22)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에 있어서 가압송수장치는 폭발, 화재, 수해, 동결 등으로 인하여 펌프의 정상기능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4-1-1	(가) (1) (5) (6) (외관)
	4-3-1	(가) (1) (2) (외관)
옥외소화전설비	5-1-1	(가) (1) (5) (6) (외관)
	5-3-2	(가) (1)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2-1-1	(가) (1) (5) (7) (외관)
	2-3-1	(가) (1) (외관)
	2-3-1	(가) (기능)
물분무소화설비	2-1-1	(가) (1) (5) (7) (외관)
	2-3-1	(가) (1) (외관)
포말소화설비	2-1-1	(가) (1) (5) (7) (외관)
	2-3-1	(가) (1) (외관)

(23)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의 펌프 토출측 배관에 설치되는 부대장치중 다음에 제기한 것은 동 제기내용에 따를 수 있다.

- ① 물올림탱크 연결구는 펌프흡입측의 수원의 수고가 항상 펌프보다 높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체크밸브 하부의 적정지점에 설치한다.
- ② 안전밸브 연결구는 펌프의 정격압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압력이 태관에 직접 접속된 모든장치의 정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펌프토출구와 체크밸브의 사이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한다.
- ③ 전동기 기동스위치 연결구는 펌프 전동기의 기동방식이 펌프 토출측 배관내의 수압의 변동치를 이용한 방법인 경우에만 설치되며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상부의 지점에 설치한다.
- ④ 토출계기 연결구는 펌프토출구의 후렌지측에 연결한다.
- ⑤ 연결송수관 연결구(연결부분)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알람체크밸브(또는 준비작동식밸브)의 상부에 연결할 수도 있다.
- ⑥ 펌프 시험배관은 체크밸브와 개폐표시형 밸브의 사이에 연결하되 펌프의 토출량을 시험할 수 있는 다른 유효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4-4	(가) (4) (외관)
옥외소화전 설비	5-4-2	(가) (외관)
스프링크라 설비	2-4-2	(가) (외관)
물분무소화 설비	2-4-2	(가) (외관)
포말 소화 설비	2-4-2	(가) (외관)

(24)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포말소화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써지업소

버 및 라이저헤드는 배관내 유효수압 지속용펌프(조키 펌프)의 용량이 분당 10리터이하 또는 10분 이내에 유효수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나 동 조키 펌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략될 수도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4-4	(가) (4) (E) (외관)
옥외소화전 설비	5-4-2	(가) (11) (외관)
스프링크라 설비	2-4-2	(가) (11) (외관)
	3-2-7	(가) (4) (외관)
	3-2-8	(가) (5) (써지업서버사향) (외관)
	3-2-13	(가) (외관)
물분무 소화설비	2-4-2	(가) (11) (외관)
포말 소화설비	2-4-2	(가) (11) (외관)
	3-2-12	(가) (외관)
	9-3-1-2	(가) (9) (외관)

(25)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의 펌프 흡입측 배관에 설치되는 부대장치중 다음에 제기한 것은 동제기 내용에 따를 수 있다.

- (1) 펌프 흡입계기 연결구는 흡입구의 후렌지측에 설치하되, 흡입측의 수원의 수고가 항상 펌프보다 낮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2) 에센트릭 리듀서는 흡입구측 후렌지와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 사용되며, 동리듀서를 설치하거나 아니하는 경우라도 흡입측 배관내 에어 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 (3) 펌프의 하부측에 있는 수원으로부터 수직 회전축의 터빈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흡입하는 경우에도 신축 튜브는 생략된다.

옥내소화전 설비	4-4	(가) (5) (외관)
옥외소화전 설비	5-4-3	(가) (외관)
스프링크라 설비	2-4-3	(가) (외관)
물분무소화 설비	2-4-3	(가) (외관)
포말소화 설비	2-4-3	(가) (외관)

(26) 물분무 설비를 제외한 소화설비의 펌프 흡입측에는 바퀴형이 아닌 스트레이너를 설치할 수도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4-4	(가) (5) (외관)
옥외소화전 설비	5-4-3	(가) (4) (외관)
스프링크라 설비	2-4-3	(가) (5) (외관)
포말소화설비	2-4-3	(가) (5) (외관)

(27)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에 있어서 제30항에 제기한 배관물 소재가 가능한 구조의 지상 배관 및 펌프실배관은 배관상의 꺾이는 부분에 티 또는 소재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옥내소화전 설비 4-4 (가) (6) (9) (외관)
- 옥외소화전 설비 5-4-4 (가) (1) (4) (외관)
- 스프링크라 설비 3-2-14 (가) (2) (3) (4) (외관)
2-4-4 (가) (1) (4) (외관)
- 물분무소화 설비 2-4-4 (가) (1) (4) (외관)
- 포말소화 설비 2-4-4 (가) (1) (4) (외관)

(28)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 설비, 포말소화 설비의 펌프실 배관이 건축물의 벽, 바닥, 보를 관통하는 경우 동배관은 동 벽(또는 바닥, 보)과 3센티미터이상의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금속스리브를 고정하여 매설하고 관통 배관을 전기절연 물질로 싸서 금속스리브와 격리 관통시키는 방식은 생략할 수 있다.

- 옥내소화전 설비 4-4 (가) (10) (외관)
- 옥외소화전 설비 5-4-4 (가) (5) (외관)
- 스프링크라 설비 2-4-4 (가) (5) (외관)
- 물분무소화 설비 2-4-4 (가) (5) (외관)
- 포말소화 설비 2-4-4 (가) (5) (외관)

(29) 비상발전설비의 냉각수 배관 및 부속은 강관, 동관, 또는 알루미늄관 중 적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옥내소화전 설비 4-3-7 (가) (8) (외관)
- 옥외소화전 설비 5-3-6-3 (가) (기능)
- 스프링크라 설비 2-3-5-3 (가) (외관)
- 물분무소화 설비 2-3-5-3 (가) (외관)
- 포말소화 설비 2-3-5-3 (가) (외관)
- 비상발전비 1-6 (가) (8) (외관)

(30)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 설비, 포말소화 설비가 시설준공후 (나)항에 제기한 방법으로 배관내의 물소제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 (가)항의 밸브는 생략할 수 있다.

- (가) (1) 10층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스프링크라 입상관의 4층마다 한개의 개폐밸브
스프링크라 : 3-2-5 (가) (1), (외관)
물 분 무 : 3-2-5 (가) (2) (외관)
- (2) 물체음식 스프링크라 설비의 출기관에서 분기되는 교차관 양측 또는 100개 스프링크라 구역마다 나누어 그구역 수평주행배수 가지관의 모관이 되는 교차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
스프링크라 : 3-2-5 (가) (2) (외관)
-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크라 설비의 교차관 양측 및 출기관 끝부분에 설치하는 호스코넥션 밸브
스프링크라 : 3-2-5 (가) (3) (외관)
- (4) 수평주행 배관이 방화구획벽을 관통할 경우 관통하는 벽으로부터 90센티미터 미만의 거리의 배관상에 설치하는 개폐밸브

- 스프링크라설비 : 3-2-5 (가) (4) (외관)
- 포말 소화 설비 : 3-2-5 (가) (1) (외관)
- 물분무소화설비 : 3-2-5 (가) (3) (외관)

(5) 각구역, 용도별 스프링크라 배관의 인입구 마다 각구역, 용도별로 설치되는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스프링크라 : 3-2-14 (가) (5) (외관)

(6)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의 펌프 토출구측배관과 연결송수관의 연결점의 상부에 설치하는 하나의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 옥내소화전설비 4-4-(가) (4) (ㄸ) (외관)
- 옥외소화전설비 5-4-2 (가) (10) (외관)
- 스프링크라설비 10-2 (가) (5) (외관)

2-4-2 (가) (10)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2-7-2-(2) (가) (5) (외관)

2-4-2 (가) (10) (외관)

포말 소화 설비 2-4-2 (가) (10) (외관)

(나) (1) 준공후의 스프링크라 설비의 입상관은 동입상관 최상단의 소제구(공칭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일것. 다만 고가 물탱크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와 소방대 연결송수구(연결송수구간의 배관 상에 있는 체크밸브를 일시 제거한 다음 적정한 통수조치를 하거나 동 밸브의 양단에 바이패스 배관을 하여 동 배관상에 하나의 개폐밸브를 설치 활용하는 등)또는 입상관 최하단부를 배수구(입상관 최하단부를 배수구로 단독 활용할 경우 배수구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로 활용하여 배관내의 통수량을 배관 공칭구경이 80밀리미터의 경우 매분 490리터 이상, 100밀리미터의 경우 매분 900리터 이상, 125밀리미터의 경우 매분 1,300리터 이상, 150밀리미터의 경우 매분 1,800리터 이상, 200밀리미터의 경우 매분 2,400리터 이상으로 하여 통수소제한다.

(2) 준공후의 스프링크라 설비의 배수주행 배관은 교차관을 소제함으로써 완료될 수도 있으며(준공 후 15년이내까지), 교차관 소제는 동 교차관 양단의 소제구를 배수구로 하여 동 교차관상의 최소 구경의 배관이 공칭구경 32밀리미터인 경우 매분 100리터 이상, 공칭구경 40밀리미터인 경우 매분 140리터 이상, 공칭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매분 220리터 이상의 유수량으로 통수 소제한다. 다만, 교차관이 없는 배관의 경우에는 가지관의 모관의 말단부에 소제구를 설치하여 동 방법으로 소제한다.

(3) 물분무 소화설비 및 포말소화 설비의 배관소제는 설비의 사용수량을 통수량으로 하여 유효한 방법으로 소제하되 (1)(2)항의 소제방식을 응용할 수도 있다.

(4) 배관소제시 검사는 육안검사로 하되 소제구를 통하여 배수되는 물의 색상이 정상적이고 이물질(모래, 진흙, 낙엽, 곤충, 쇠붙이, 목재류, 쓰레기등)이 섞여 나오지 아니할 때를 배관청소의 완결로 한다.

스프링크라설비 3-2-3 (나) (기능) (발체사항)

물분무소화설비 3-2-3 (나) (기능) (발체사항)

(31) 스프링크라 설비의 지상배관 설비에 있어서 둘 이상의 알람체크밸브, 준비작동식밸브, 건식밸브 또는 일제분사식 밸브를 담당하는 급수주관으로서 입상관은 동 밸브(한구역울 2개 이상의 밸브가 병렬연결되어 담당할 경우에는 동 밸브의 공통인입측배관의 공칭구경과 동일한 구경을 가진 하나의 밸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가 각각 담당하는 구역이 유효하게 방화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대구경을 가진 밸브의 공칭구경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구경을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입상관의 길이가 대단히 길어서 관내의 마찰손실이 클 경우에는 최고 위의 최원거리에 있는 헤드에 걸리는 방출수압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 킬로그램이하가 되지 아니하도록 수리역학계산에 따라 입상관의 구경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최하위의 최단거리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압이 매평방센티미터당 7 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2-7 (가) (1) (2) (외관)

(32) 스프링크라 설비의 드라이펜던트 헤드는 동결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배관내의 물에 대한 유효한 방동조치(적응한 보온재를 사용한다든가 배관내에 적정한 농도의 클리세린등 적응방동액의 주입 및 가열장치 설치등)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습식설비의 경우의 회향식 드릴뿔의 길이에 대한 제한도 생략할 수 있다.

스프링크라설비 3-2-8-(가) (3) (외관)

3-2-9-(가) (1) (2) (3) (외관)

3-2-15-(가) (1)

(33) 공칭구경 15밀리미터의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서 공칭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하나의 밸브(또는 배수배관)가 담당하는 스프링크라 헤드의 개수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에 따를 수 있다.

(1) 헤드의 방호반경이 2.3미터인 경우에는 밸브(또는 배수배관)의 담당구역면적이 4,800평방미터 이하로서 그 구역내의 최대 방호구획에 설치되는 헤드 개수가 100개미만일 때는 100밀리미터 이상, 100개 이상 160개이하일 때는 125밀리미터 이상, 161개 이상 275개이하일 때는 150밀리미터 이상, 276개 이상일 때는 200밀리미터의 공칭구경을 가진 밸브가(또는 배수배관) 그 구역내의 모든 헤드를 담당한다.

(2) 헤드 방호반경이 2.1미터인 경우에는 밸브(또는 배수배관)의 담당구역 면적이 4,800평방미터 이하로서 그 구역내의 헤드의 수가 66개 이상 100개 이하일 때는 100밀리미터 이상, 101개 이상 160개 이하일 때에는 125밀리미터이상, 165개 이상 275개 이하일 때는 150밀리미터 이상, 276개 이상일 때는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칭구경을 가진 밸브(또는 배수배관)가 그 구역에 설치될 수 있는 모든 헤드를 담당한다.

(3) 헤드의 방호반경이 1.7미터인 경우로서 폐쇄형의 헤드를 사용하였을 때는 밸브(또는 배수배관) 담당구역 면적이 2,300평방미터 이하로서 그 구역내의 헤드의 수가 41개 이상 55개 이하일 때에는 100밀리미터 이상, 56개 이상 90개 이하일 때에는 125밀리미터이상, 91개이상 150개 이하일 때에는 150밀리미터 이상, 151개 이상일 때에는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칭구경을 갖는 밸브(또는 배수배관)가 그 구역내에서 설치될 수 있는 모든 헤드를 담당한다.

(단, 상하향식 헤드의 병용설치 제외)

3-2-10 (가) (1)-(7) (L) (C) (외관)

3-2-11 (가) (1) (2) (외관)

5-3 (가) (1) (2) (외관)

6-1-3 (가) (1) (2) (외관)

(34) 스프링크라 설비의 소제구 개방에 필요한 반자부분에 점검구의 설치에 있어서는 가지관의 소제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경우, 별도 점검구는 생략할 수도 있다.

3-2-14 (가) (6) (외관)

(35)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서 제30항에 제기한 방법의 배관내 물소제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배관내 소제상 필요한 가변성 기울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배관지지물의 구조는 생략할 수 있다.

3-2-14 (가) (7) (외관)

(36)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 급수입상관의 공칭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일 경우 5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울, 입상관의 공칭구경이 65밀리미터 내지 80밀리미터의 경우 32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

3-2-18 (가) (1)(외관)

(37)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서 헤드의 설치높이가 4미터 이상일 때는 공칭구경 15밀리미터인 헤드를 방호 반경 2.3미터로 적용하는 대상구역에 한하여 집열판 이외에 리세스후러시켈을 설치할 수도 있다.

4-2 (가) (2) (외관)

(38) 스프링크라 주변의 전기 기기물이 스프링크라의 살수범위내에 들어가는 공간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프링크라와의 간격은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

4-3 (가) (4) (외관)

(39)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 설비에 있어서 알람체크 밸브, 준비작동식 밸브, 건식밸브, 또는 일제개방밸브

는 폭발, 화재, 수해, 풍해, 동결등으로 인하여 동밸브의 정상기능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고 쉽게 접근하여 조작,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되 관계자 이외의 외인이 아무나 접근하여 손대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스프링크라 설비 5-2-(가) (3) (4) (외관)
6-1-2-(가) (1) (2) (외관)
8-1-2-(가) (1) (3) (외관)

물분무소화 설비 5-1 (가) (1) (3) (외관)

(40) 습식스프링크라 설비의 벨 또는 싸이렌은 폭발, 화재, 수해, 풍해등의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동 경보장치의 정상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담당 방호구역의 모든 부분에서 유효한 경보음이 청취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경우 경보용 알람체크 밸브 및 유수경보스위치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수도 있다.

5-2 (가) (5) (외관)

(41)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 알람체크 밸브의 배수 수평주행 배관측에는 개폐밸브를 생략할 수도 있다.

5-4-1 (가) (2) (외관)

(42) 알람체크밸브를 설치한 습식스프링크라 설비의 육안 유수 확인기는 동 밸브가 담당하는 구역내에서 동 밸브로부터 최원거리에 테스트 코넥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유수경보에 있어서는 전기적 지연 방식(타이머장치)으로 압력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리타드 챔버를 생략할 수 있다.

스프링크라 설비 5-4-1 (가) (3) (외관)

(43) 준비작동식,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서 자연 낙차에 의한 상압이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4킬로그램이상 걸리는 곳이라도 준비작동식 밸브의 내압이 동 밸브의 상용수압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토출 최대압이 걸리는 헤드의 토출압이 매평방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압조정 밸브 엇자스트먼트밸브 및 익조스트 밸브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2-3 (가) (1) (2) (외관)

(44) 스프링크라 설비에서 하나의 일제분사식 밸브가 담당하는 공칭구경 15밀리미터인 헤드의 개수는 20개까지 허용될 수 있으나 2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리역학계산에 의한다.

8-1-3 (가) (3) (4) (외관)

(45) 스프링크라 설비 및 물분무소화 설비에 설치하는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방대연결송수관의 공칭구경을 10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수평주행 배관상에 하나의 체크밸브와 연결송수관 사이의 배관에 유효한 배수가 가능한 부분에만 티를 사용하여 드립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시설할 수도 있다.

스프링크라설비 10-2 (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2-7-2-2 (가) (1) (2) (3) (4) (6) (7) (8) (9) (10) (12) (13) (17) (외관)

(46) 포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는 소화약제의 동결, 열에 의한 변질(동 약제의 물리적, 화학적 관련 특성은 약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오염 및 이물질과의 혼합, 폭발성 환경, 동 설비가 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또는 저장된 곳)등의 위험성이 배제될 수 있는 곳으로서 동 설비가 담당하는 방호 구역과 별도방화구획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다만, 부득이하여 동설비의 담당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 구획된 불연성 구조물내에 보존되어야 한다)일 경우 별도의 제한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1-1 (가) (1) (2) (3) (외관)

4-1-1 (가) (기능)

4-2-1 (가) (1) (2) (3) (외관)

4-2-1 (가) (기능)

4-3-1 (가) (1) (2) (3) (외관)

5-1-1 (가) (1) (2) (외관)

5-1-1 (가) (기능)

(47) 포말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스프링크라의 작동 온도가 70도 이상인 경우 조기 동작장치의 부착은 스프링크라의 설치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9-1-2-1 (가) (1) (외관)

(48) 포말소화 설비에 있어 펌프의 흡입측의 스트레이나가 바케형(또는 2개 이상의 Y형)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차압식 개방밸브의 인입측에 스트레이나의 설치는 생략할 수도 있다.

9-2-1-3 (가) (5) (외관)

(49) 포말소화 설비의 알람체크 밸브는 주차장등 배포배관층이 1개층의 경우라도 설치될 수 있다.

9-3-1-1 (가) (2) (외관)

(50) 포말소화 설비에 있어서 3개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라도 알람체크 밸브는 다압식이 아닐 수 있다.

9-3-1-2 (가) (2) (외관)

(51) 포말소화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대류지 밸브 또는 하나의 알람체크 밸브가 담당하는 흡헤드, 흡위터, 스프링크라, 흡위터스 프레이 헤드수는 소화약제가 단백포, 불화단백포, 계면활성제 또는 알콜포의 경우 90, 수성막포의 경우 160개가 각각 초과하더라도 공학 계산에 따라 증가될 수 있으며 모든 배관의 구경 및 길이도 수리역학계산(토출압력이 균등하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9-3-1-2 (가) (6) (외관)

9-2-2-2 (가) (5) (외관)

3-2-6 (가) (외관)

- 3-2-7 (가) (기능)
 3-2-8 (가) (외관)
 3-2-9 (가) (외관)
- (52) 포말소화 설비의 음향장치(경중 및 싸이렌)는 하나의 유수경보장치가 담당하는 전 방호구역내에서 유효한 음향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경우 음향경계 구역의 수평거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9-5-1 (가) (2) (3) (외관)
- (53) 불연성 개스 및 증발성 액체 소화설비의 소화 억제량 기준은 방호대상(방호구획)이 2개 이상 있을때 동 방호대상별로 선택밸브를 사용한 방출방식으로 할 경우는 최대방출량을 필요로 하는 방호대상의 소요 기준량으로 할 수 있으며, 선택밸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을 담당 용기방식으로 하고 그 억제량은 대상별 소요량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불연성개스 소화설비 3-2-1 (가) (3) (외관)
 3-2-2 (가) (1) (외관)
 증발성액체 소화설비 2-2-1 (가) (2) (외관)
 2-2-2-1 (가) (2) (외관)
- (54) 불연성개스 소화설비, 증발성액체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의 방호구역내에 설치되는 음향기는 그 구역내의 모든 부분에서 유효한 경보음이 청취될 수 있는 음량을 가져야 한다.
 불연성개스 소화설비 : 12-1 (가) (기능)
 증발성액체 소화설비 : 12-1 (가) (기능)
 분말 소화설비 : 4-11-1 (가) (기능)
- (55) 불연성개스 소화설비, 증발성액체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에 있어서 배관 및 배관부속은 주철제(부속은 가단주철제 가(可)) 및 비금속이외의 재질로서 불연성개스 설비의 경우 고압용기 방식에 있어서는 스케줄80의 강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 저압용기 방식의 경우와 증발성 액체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스케줄40의 강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용접배관할 수 있다.
 불연성개스 소화설비 16-1-1 (가) (외관)
 16-1-2 (가) (1) (4) (나사가
 난후 렌지사항) (6) (7)
 (외관)
 16-2-1-1 (가) (1) (2) (외관)
 관)
 16-2-1-2 (가) (1) (2) (3)
 (외관)
 16-2-2-1 (나) (기능)
 16-2-2-2 (나) (기능)
 16-3-1 (가) (10) (12) (외관)
- 증발성액체 소화설비 16-1-1 (가) (1) (3) (4) (외관)
- 16-1-2 (가) (2) (나사이음형
 후렌지사항) (3) (4)
 (5) (외관)
 16-2-1-1 (가) (1) (2) (3)
 (4) (5) (외관)
 16-2-1-2 (가) (1) (2) (3)
 (4) (외관)
 16-2-2-1 (가) (1) (2) (3)
 (외관)
 16-2-2-2 (가) (1) (2) (3)
 (외관)
 17-1-1 (가) (13) (외관)
 17-1-2 (가) (13) (외관)
- 분말 소화설비 4-15-2 (가) (2) (나사이음형 사항)
 (4) (외관)
 4-16-1-1 (가) (1) (2) (3) (외관)
 4-16-2-1 (가) (외관)
 4-16-2-2 (가) (1) (2) (외관)
- (56) 불연성개스 소화설비에 배관방식, 구경 및 길이가 모든 분사노즐에서 법정시간내에 약제가 방출, 확산(전역 방출방식의 경우)될 수 있도록 결정된 경우에는 저장용기와 노즐간의 거리, 저장용기와 높이 노즐간의 거리(전역 방출방식의 경우)배관방식 노즐을 창작하는 배관의 선택조건, 분사노즐의 설치 위치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6-3-1 (가) (1) (2) (6) (7) (8) (외관)
 16-3-2 (가) (1) (2) (외관)
- (57) 불연성개스 소화설비, 증발성액체 소화설비에 있어서 관이 꺾이는 부분에다 티보다 마찰손실이 적은 배관부속(엘보 또는 노말밴드)으로 배관이음할 수 있으며 분사노즐간의 간격에 관계없이 가지관과 노즐의 리턴밴드 배관방식에 의한 연결은 생략할 수 있다.
 불연성개스 소화설비 16-3-1 (가) (3) (9) (외관)
 16-3-2 (가) (3) (9) (외관)
 증발성액체 소화설비 17-1-1 (가) (3) (10) (외관)
 17-1-2 (가) (3) (9)
- (58) 증발성액체 소화설비의 분사노즐의 등가 구분 면적은 최대 20,258평방센티미터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동 분사노즐의 접속관구경은 설계에 따라 선택된 노즐과 상호 적응구경의 관과의 접속이 가능하다.
 4-1 (가) (2) (외관) (9) (외관)
 4-2 (가) (7) (외관)
 4-3 (가) (2) (외관) (8) (외관)

(계속)